■ 전파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서식] <개정 2016. 7. 12.>

무선국 신고증명서

(「전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
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)

신고번호	제 호				
수리일		무선국의 준공기한			
법인명		법인등록번호			
시험전파 발사 기간 및 내용					
무선국 종별 및 명칭					
무선국의 목적					
설치 장소	송신소				
	수신소				
통신사항		통신상대방			
무선기기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	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	전파형식, 점유 주파수대폭(㎑, ㎒)	주파수 (㎑, ㎒)	안테나공급전력 (W, kW)	안테나형식·구성 및 이득
운용허용시간					
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					
부관(附款) 사항					

[] 「전파법」 제19조의2제1항제3호·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[]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([]정정 []재발급)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전파관리소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20g/㎡)]